■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2. 10.>

임대차계약 [] 신고서(신고증명서)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사업자	[] 개인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구분	대출금 (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원)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개시일	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최초 [] 변경 전						
		변경 후						
		[] 최초 [] 변경 전						
		변경 후						
		[] 최초 [] 변경 전						
		변경 후						
		[] 최초 [] 변경 전						
		변경 후						
		[] 최초 [] 변경 전						
		변경 후						
		[] 최초 []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최초 신고 []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나.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라.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